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3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이용우 · 장철민 · 김우영
박해철 · 박민규 · 김남희
김한규 · 김남근 · 이학영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갖지만,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 · 성폭력 · 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 · 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

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 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친고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를 삭제한다.

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07條(名譽毀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10年 以下の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309條(出版物 等に 依한 名譽毀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 10年 以下の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307條(名譽毀損) <삭 제>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9條(出版物 等に 依한 名譽毀損) <삭 제>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第310條(違法性の 阻却) 第307條</u> <u>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u> <u>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u> <u>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	<u><삭 제></u>
<u>第312條(告訴와 被害者の 意思)</u> <u>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u> <u>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u> <u>수 있다.</u> <u>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u> <u>被害者の 明示한 意思에 反하</u> <u>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u>	<u>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u> <u>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u> <u>있다.</u>